

부천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

의안번호	90
------	----

제출년월일 : 1996. 2. 5

제 출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안이유

- 국내여비규정(19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 및 지방자치법시행령(19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 중 의회의 회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 제3조)

부천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①의원의 의정자료 수집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의정활동비는 매월 350,000원으로 하고 부천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회의수당)①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 중 의회의 회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으로 하고,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4조(여비지급)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시 국내여비는 별표1, 국외여비는 별표2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부천시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인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인당)
의장 부의장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6,500	37,500	25,000
의원	2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6,500	18,000	18,000

비 고 : 1.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 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부천시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별표 2]

국 외 여 비 지 급 기 준 표

(단위 : 미불화)

구 분	철 도 운 입	선 박 운 입	항 공 운 입	자 동 차 운 입	일 비 (1인당)	숙 박 비 (1야당)	식 비 (1일당)	준 비 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의 장 부 의 장	•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임.	1등정액	실비액	가등급 25	가등급 137	가등급 107	140	170	195
					나등급 25	나등급 99	나등급 78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다등급 25	다등급 76	다등급 58			
					라등급 25	라등급 65	라등급 49			
의 원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2등정액	실비액	가등급 20	가등급 120	가등급 81	130	155	180
					나등급 20	나등급 78	나등급 59			
					다등급 20	다등급 58	다등급 44			
					라등급 20	라등급 51	라등급 37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뉴욕, 런던, 파리, 마드리드, 동경, 홍콩, 모스크바

나. 나등급

- (1) 아세아주, 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아, 싱가포르, 대만, 북경, 하노이
- (2) 남·북아메리카주 :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자메이카
- (3) 유럽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스위스, 스웨덴, 필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오크라이나, 헝가리, 덴마크, 체코
- (4) 중동·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남아프리카 공화국

다. 다등급

- (1) 아세아주·대양주 : 인도, 터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 (2) 남·북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 (3) 유럽주 : 아일랜드, 포르투갈,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 (4) 중동 아프리카주 :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카나파소, 모리시어스, 잠비아, 알제리

라. 라등급

- (1) 아세아주·대양주 : 미얀마, 스리랑카, 튀지, 네팔, 몽골
- (2) 남·북아메리카주 : 구아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구아이, 파라구아이, 수리남
- (3) 유럽주 : 해당국가 없음.
- (4) 중동·아프리카주 : 레바논, 예멘, 모로코, 튀니지, 루안다, 말라위, 스와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나미비아, 타자니아, 나이지리아

2. 1의 국가 및 도시별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